

□ 주요내용

가. 과산화벤조일 등 30 품목의 성분규격 제·개정

- (1)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중금속 규격 강화 또는 신설(Ⅱ. 제3. 가. 12, 13, 나. 83, 85, 93, 96, 97, 98, 101, 108, 119, 122, 133, 145, 146, 147, 149, 153, 158, 163, 180, 181, 182, 185, 186, 187, 188, 192, 196, 204)
- (2) 제조과정 중 생성될 수 있는 잔류용매, 시안화합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유해물질 규격 신설(Ⅱ. 제3. 나. 83, 93, 98)

- (3)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Ⅱ. 제3. 나. 108, 122, 149, 153, 196, 204)
- (4) 성분규격 개정을 통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확보

나. 일반시험법 중 일부 제·개정

- (1) 원자흡광광도법의 개정(Ⅳ. 19)
-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및 수은 시험법의 신설(Ⅳ. 37, 38)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안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09-215호, 2009. 6. 22 -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과정중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한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에 브롬산염이 생성되는 문제점이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안 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먹는샘물 제조 시 미생물 살균처리를 위하여 오존살균을 하였을 경우 소독부산물을 제거토록 함.

- (1) 먹는샘물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오존살균 후 소독부산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에 먹는샘물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에 대하여 0.01mg/L이하 수질 기준을 설정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